

경의중앙선 할머니 협박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사고대응체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9일 18:00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(옥수~한남역)에서 발생한 협박(욕설 등)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.
 - 피의자(남, 신원미상)는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(여, 신원미상)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있다.
 - 철도경찰은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며 형법상 협박,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.
 - * (형법)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, 500만원이하의 벌금,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 - * (철도안전법) 여객은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.
 - 또한, 국토교통부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 접수, 현장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심층조사할 계획이다.
 -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“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,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- ※ 철도지역 내에서 범죄를 목격, 피해를 입었을 경우, 철도범죄 신고전화 (1588-7722) 혹은 철도범죄신고 앱*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 (철도범죄 신고 앱) 구글플레이 및 애플스토어에서 “철도범죄신고” 검색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	조성균	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길호	(044-201-4545)